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하도급법 제18조)

| 개 요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종속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불필요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① (생략)
- ② <신설>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칭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경영상 정보 유형]

- ① 제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 내역서 등)
- ② 다른 사업자에 대한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③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 ④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 · 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⑤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와의 납품조건(납품가격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⑥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 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부당한 경영간섭 적발 시]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1억 5천만원 이하

불공정거래 관련 문의 및 신고 안내*

[제도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5
	제조하도급개선과	044-200-4599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044-200-4613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3966

[불공정거래 신고_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02-2110-6146(건설) 02-2110-6161(제조)
	부산사무소	051-460-1045
	광주사무소	062-975-6844
	대전사무소	042-481-8021
	대구사무소	053-230-6300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2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02-549-210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85
	한국전기공사협회	02-3219-0513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2-3488-618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02-3019-3323
	대한건축사협회	02-3415-6833
	한국소방공사협회	02-520-6030

[불공정거래 신고_기타]

대중소기업 · 농어업 · 협력재단	수 · 위탁 분쟁조정협의회	02-368-8470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 · 중재 위원회	02-368-8768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588-1490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조정협의회	
	약관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	

바뀌는 하도급법,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수급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
(‘18.7.17.)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조정협의 범위 확대, '원재료 가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하도급법 제16조의2)

| 개요 |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대상이 기존의 '원재료 가격'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로 확대됨
최저임금 인상, 전기료 인상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생략)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생략)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
② (생략)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생략)	②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 (생략)

[신청요건]

자격요건

- 신청인: 중소기업(수급사업자),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피신청인: 대기업, 연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이상 원사업자)

공급원가 인상 요건 *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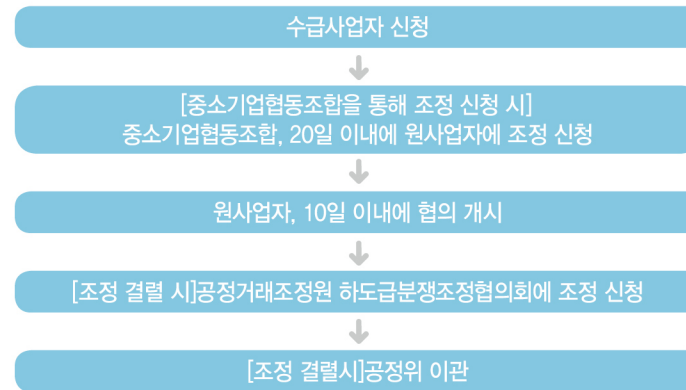
(1)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

- ① 특정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재료비가 10% 이상 상승한 경우
- ②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한 경우
*단, 최근 3년 최저임금 인상을 평균이 7% 미만인 경우 최근 3년 평균 인상을 적용
- ③ 재료비/노무비/경비(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등)가 잔여 하도급대금(기성분 제외)의 3% 이상 상승한 경우

(2)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① 하도급계약 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위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재료비/노무비/경비(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등)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 상승한 경우

[신청 및 협의 절차]



[신청서류]

- ① (공통)공급원가 인상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공통)하도급계약서 사본
- ③ (공통)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공통)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 ⑤ (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중소기업협동조합 총회 또는 의사록
- ⑥ (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조합원 중 '공급원가 인상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거부할 경우]

(과징금)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하도급법 제19조 및 제35조)

| 개요 |

원사업자가 수주기회 박탈, 거래단절 등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 이내)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규정을 강화함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하도급법 제19조)

- (1)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신고
- (2)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 (3)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협조
- (4) **공정위 조사 협조(신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불공정행위(하도급법 제35조)

- (1) 기술유용
- (2)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 (3) 부당 위탁취소
- (4) 부당 반품
- (5) **보복행위(신규)**

[징벌적 손해배상 상담]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한국공정거래조정원 內)'(T.1588-1490)

[보복조치 적발 시]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3억원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3배 이하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하도급법 제2조 및 제23조)

| 개요 |

하도급법에서 정의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더 많은 기술자료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기술탈취 사건의 경우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까지로 조사시효를 확대하여 더 많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구제 받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⑤ ————— 합리적인 노력 —————.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생략)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기술탈취 적발 시]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3배 이하

